

# 2023년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공고

“ 기술기업의 **Start up**부터 **Scale up**까지 함께하는 **혁신성장플랫폼** ”

기술보증기금에서 **NCS(국가직무능력표준)**에 기반한 **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**으로 정규직 신입직원을 모집합니다.

## 1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

□ (채용인원) 총 73명

직무	모집부문	채용인원	지원자격	직무기술서	근무지
기술보증 및 기술평가	일반	21명	제한없음	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[테]	전국
	이공계	21명	이공계 중 한 분야의 교육을 7과목 이상 이수한 자		
	박사	9명	통계·데이터, 경영·경제(금융), 정보통신, 기계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		
	CPA·세무사	3명	한국공인회계사(KICPA) 또는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		
	보훈 (취업지원대상자)	6명	취업지원대상자		
전산		8명	제한없음	전산 [클릭]	부산
법무· 채권관리	일반	3명	제한없음	법무· 채권관리 [테]	전국
	변호사 또는 변리사	2명	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		
총 인원		73명			

- 전형단계별 '모집부문' 단위 경쟁으로, 모집부문 간 중복지원 불가 및 **중복지원 시 불합격** 처리
- 취업지원대상자는 '보훈' 모집부문(구분채용) 또는 타 모집부문(가점우대) 중 **선택지원** 가능
- **박사, CPA·세무사, 변호사·변리사는 가급적 해당 모집부문(구분채용)으로 지원** 요망
- 통계·데이터(박사) 해당 분야 : 통계학, 산업공학,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, 기계학습 등 관련 분야
- 경영·경제(금융)(박사) 해당 분야 : 경영학, 경제학, 금융공학 관련 분야
- 정보통신(박사) 해당 분야 : 컴퓨터공학, 소프트웨어 및 관련 융합 전공, 정보(전자)통신공학 관련 분야
- '박사' 모집부문은 박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등으로 학위취득 증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('24년 2월) 지원 가능
- **접수마감일 기준으로** 'CPA·세무사' 모집부문은 한국공인회계사(KICPA) 또는 세무사 자격 취득자, '변호사·변리사' 모집부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자격증별 채용인원 구분 및 전형단계별 기준 차등 없음

## 2

### 지원자격

학력\* · 연령\*\* · 성별 등에 제한없음

\* 박사 모집부문 제외

\*\* 단, 접수시작일 기준 기술보증기금 정년(만60세 이상)을 초과한 자는 지원불가

채용 확정(11월말 예정)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

\* 졸업 · 재학 · 이직절차 · 군 전역 등을 사유로 **입사 유예 불가**

'기술보증 및 기술평가' 직무의 일반, 이공계, 보존 및 '법무·채권관리' 직무의 일반 지원자는 아래 최저기준 이상 공인외국어성적 보유자

구 분	TOEIC	TOEIC Speaking	NEW TEPS	TOEFL (IBT)	OPIc	JPT	HSK
점 수	800점	130점	328점	81점	IM2	660점	5급

• 2021년 7월 18일 이후 응시하고 2023년 7월 17일(접수마감일)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

\*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([www.gosi.go.kr](http://www.gosi.go.kr))에 등록된 외국어 성적에 한하여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인정(시험별 성적유효기간 내 등록된 성적만 인정됨)

- 서류전형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, 이후 채용 전형에는 외국어성적 점수 미반영
- 입사지원 시 유효한 외국어성적이라도, 전형 중 외국어성적증명서 미제출(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불가 등 이유 불문) 또는 확인 불가로 판명된 경우 **지원자격 미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**

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

\* 채용 확정(11월말 예정)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

기술보증기금 「인사규정」 상 채용제한 사유(9. 유의사항 참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## 3

### 전형단계별 일정

전형단계별 일정

서류전형 (20배수 선발)	필기전형 (4배수 선발)	1차 면접 (2배수 선발)	2차 면접 (1배수 선발)	신체검사 신원조사	최종합격
8.8.(화) 발표 *CPA·세무사/박사/ 변호사·변리사 : 5배수 선발	⇒ 8.19.(토) 실시 * 장소 : 서울/부산	⇒ 9월 중 * AI역량검사 실시	⇒ 10월 중	⇒ 10월 말	⇒ 11월 초

- 전형 절차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채용홈페이지 (kibo.incruit.com)에서 확인
- 'CPA·세무사, '박사, '변호사·변리사' 모집부문은 서류전형으로 5배수 선발 및 필기전형 면제
- 모집부문별 선발 배수에 따른 합격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상
- 서류·필기·1차 면접전형은 전형단계별 제로베이스(Zero Base) 평가
- 2차 면접전형은 필기전형·1차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 평가
-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 '5. 전형절차 및 방법 중 □ 동점자 처리기준' 참고
- 필기전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등록(미등록 시 응시 불가)

## 4 입사지원서 접수

□ (접수기간) 2023. 6. 30.(금) 14:00 ~ 7. 17.(월) 11:00 (전산접수 완료 기준)

□ (접수방법) 채용 홈페이지(kibo.incruit.com) 접수

○ 우편, E-mail,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

\* 마감일은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\*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또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**입사지원서 수정·취소 불가**

\* '박사' 모집부문의 경우, 학위논문요약서 및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제출

### ※ [입사지원 시 유의사항]

-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, 입사지원 시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직·간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유의  
예시) 성별·신체조건·학력·학교명·연령·가족관계·출신지·혼인 여부 등
-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하더라도 인정 불가
- 입사지원서 미기재 경력사항은 추후 경력증명서 제출하더라도 경력 불인정  
(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기간 등 포함 반드시 기재하실 것)
- '9. 유의사항' 및 입사지원서 '작성요령', FAQ 등에 유의하여 입사지원서 내용 오류를 반드시 확인 후 최종 지원하실 것

## 5 전형절차 및 방법

□ 서류전형(총 배점 100점)

○ NCS기반 자기소개서(50점)·교육사항(25점)·자격사항(25점) 평가 합산 점수 + 가점

\* 서류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'7.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'을 참고

○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등급 처리

\* 회사명 오기재, 동일 내용 복사, 표절 등

○ 교육사항은 모집부문별 단일 분야 교육사항에 대해 평가하며,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 전까지 이수 완료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

- \* '23년 2학기 수강과목 인정 불가
- \* PASS OR FAIL 과목은 인정 불가
- \* 직업교육(과목당 50시간 이상) 및 석·박사 과정의 교육과목 입력 가능
- \* 보훈(취업지원대상자) 모집부문은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외 법무채권관리 관련 교육과목도 입력 가능
- \* 'CPA·세무사', '박사', '변호사·변리사' 모집부문은 교육사항 평가 제외

- 자격사항은 **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합격 발표**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
- \* 직무별 인정 자격증 세부내역은 '붙임1' 확인

□ 필기전형(총 배점 100점)

- 직업기초능력평가(40점) · 직무수행능력평가(60점) 합산 점수 + 가점
- \* 필기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'7.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'을 참고
- 'CPA·세무사', '박사', '변호사·변리사' 모집부문은 필기전형 면제

구분	모집부문		평가과목 (출제범위)	출제유형	배점	
(1교시) 직업기초 능력평가	필기전형 대상 모집부문 공통		NCS 직무능력검사 (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조직이해능력)	객관식	40점	
(2교시) 직무수행 능력평가	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	일반 (경제/경영 중 택 1)	경제 (미시경제학, 거시경제학, 계량경제학)	객관식 단답형 약술형	60점	
			경영 (중급회계, 재무관리, 경영학)			
	전산	보훈 (취업지원대상자)	직무상황 논술평가			논술형 약술형
			직무상황 논술평가 및 코딩테스트			논술형 약술형
법무· 채권 관리	일반	법 (민법, 상법, 민사소송법)		객관식 단답형 약술형		
<b>합 계</b>					<b>100점</b>	

- 입사지원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(서울/부산)을 선택하고 최종 제출 또는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
- 시험장 수용인원 초과 시 모집부문별 응시 예상인원과 입사지원서 先제출자 우선권 부여에 따라 부득이 희망 지역과 다르게 임의 배정될 수 있음
- 직업기초능력평가 배점(40점)의 50% 미만 득점 시 평가 합산 점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 
(단, 필기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+ 예비합격인원 초과인 모집부문에 한하여 적용)
- 출제범위는 평가과목을 기준으로 하되, 일부 문제는 평가과목과 연계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
-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(일반) 모집부문은 부문 내 평가과목(경영/경제)별 필기전형 실제 응시인원 비율에 따라 필기전형 합격 인원 비율 결정  
(단, 서류전형과 1차 · 2차 면접전형에서는 평가과목(경영/경제)별 응시인원 비율에 따른 구분 없음)

※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 신청 안내

- (지원대상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」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」에 의한 상이등급기준 해당자
- (지원내용) 저시력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, 이등 편의를 위한 저층 고사장 우선 배정, 대리마킹 담당대기 등
- (신청방법) 입사 지원 시 별도 신청

□ 1차 면접(실무자) 전형(총 배점 100점)

- 조직적합성(35점) · 직무적합성(40점) · 토론(25점) 평가 합산 점수 + 가점(취업지원대상자/장애인)
- AI 역량검사(적부 심사)

구 분	평가 내용	배 점
조직적합성 면접	기금 문화적합도 평가	35점
직무적합성 면접	직무 지식 · 전문역량 평가	40점
토론 면접	문제해결능력 및 성과창출능력 평가	25점
<b>합 계</b>		<b>100점</b>
AI 역량검사	종합적합성 평가	적부 심사

- 평가 합산 배점(100점, 가점 제외)의 60% 이하 득점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
- AI 역량검사 결과 종합적합성 결과 종합등급 **D등급(최하등급)** 이하는 **부적격 판정 후 불합격 처리**
- AI 역량검사 응시 방법은 추후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하며, 지정된 검사 기간에 **미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**
- AI 역량검사 응시를 위해서는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PC 환경 등 필요

□ 2차 면접(임원) 전형(총 배점 100점)

- 종합적합성(50점) · 1차 면접전형(25점) · 필기전형(25점) 평가 합산 점수 + 가점(취업지원대상자/장애인)
- 종합적합성 면접 평가 : 조직적합도와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
  - \* 종합적합성 평가 배점(50점, 가점 제외)의 60% 이하 득점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
  - \* 1차 면접전형과 필기전형 평가 점수는 각 25점 배점으로 환산 적용한 득점(가점 제외) 기준

□ 동점자 처리기준

전형단계	동점자 처리 적용 항목	기준
서류전형	①자기소개서 → ②교육사항 → ③자격사항 → ④가점	고득점자 順
필기전형	①직무수행능력평가 → ②직업기초능력평가 → ③가점	
1차 면접전형	①직무적합성 → ②조직적합성 → ③토론 → ④가점	
2차 면접전형	①종합적합성 → ②1차 면접전형 → ③필기전형 → ④가점	

- 위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세부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, 모두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

□ 채용목표제 적용

구분	적용 전형단계	적용 기준
양성평등 채용	2차 면접전형	특정 성별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5%에 미달하는 경우, 35%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
비수도권 지역인재	2차 면접전형	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5%에 미달하는 경우, 35%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
이전지역(부산)인재	전형단계별	모집부문별 선발예정인원의 27%에 미달하는 경우, 27%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

- 선발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
- 채용목표제는 전형단계별 **선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** 응시자에 한하여 적용
-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이전지역(부산) 인재 인원을 포함하여 운영
-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선발은 '일반', '이공계', '박사', '보훈', '전산' 모집부문(채용예정인원 **5명 초과**)에 한하여 적용
- 양성평등 채용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'일반', '이공계', '박사', '보훈', '전산' 모집부문의 2차면접전형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5%에 도달할 때까지 **2차면접전형 종합적합성**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
- 이전지역(부산) 인재는 '일반', '이공계', '박사', '보훈', '전산' 모집부문의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**합격 최저점 -3점 이내** 점수를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

## 6 근무조건

(채용형태) 정규직 신입직원

\* 직무 및 모집부문, 학력 등에 상관없이 모두 **일반직 5급(대졸 수준)**으로 입사

(근무지) 전국 영업점 또는 본점

(근무시간) 주 5일, 1일 8시간

(연 봉) 약 4,960만원

\* 알리오 공시 신입직원 초임 (군경력 및 전직 경력 등 미보유자 기준)

## 7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

구 분	가점	적용 단계				우대 요건
		서류	필기	1차 면접	2차 면접	
취업지원대상자	10점 /5점	○	○	○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</li> <li>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li> <li>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li> <li>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/li> <li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/li> <li>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등에 해당하는 <b>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 등</b></li> </ul> <p>* 'CPA세무사' 및 '법무채권관리' 모집부문(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)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외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작은 경우 가점 적용</p>
장애인	10점 /5점	○	○	○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등에 해당하는 <b>장애인</b></li> </ul> <p>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한 <b>상이등급기준 해당자</b>도 포함</p>



사회적배려	저소득층	2점	○	○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</li> <li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</li> </ul>
	다문화가족	2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</li> </ul>
	북한이탈주민	2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</li> </ul>
	경력단절여성	2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</li> <li>* 공고마감일 기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</li> </ul>
공인노무사	3점	○	○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</li> </ul>	
기술거래사	1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거래사 자격증 보유자</li> </ul>	
탄소중립 전문가	1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검증심사원,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자격증 보유자</li> </ul>	
데이터 전문가	1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DP, DAP, SQLP, OCM,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보유자</li> </ul>	
안전 전문가	1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안전기술사, 건설안전기사, 기계안전기술사,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</li> </ul>	
비수도권 지역인재 (붙임2 반드시 확인)	1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제외)을 기준으로 수도권(서울·경가·인천) 또는 해외를 제외한 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</li> </ul>	
이전지역(부산) 인재 (붙임3 반드시 확인)	1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제외)을 기준으로 부산 소재 학교를 졸업(예정)한 자</li> </ul>	
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	1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공공기관 청년인턴제」에 의한 체험형 또는 채용형 청년인턴으로 1개의 공공기관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자</li> <li>* 근무기간(60일)은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</li> <li>* 「공공기관 청년인턴제」에 의한 청년인턴 해당 여부는 근무 공공기관에 확인</li> </ul>	
기술보증기금 우수청년인턴	2점	○	-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공공기관 청년인턴제」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중에서, 23년 정규직 우대 우수 청년 인턴으로 선정된 자</li> </ul>	
박사	-	-	-	필기 면제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계, 정보통신, 경영·경제(금융), 통계·데이터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</li> <li>*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(박사)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</li> </ul>
한국공인회계사 (KICPA) ·세무사	-	-	-	필기 면제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공인회계사(KICPA) 또는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</li> <li>*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(CPASE무사)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</li> </ul>
변호사·변리사	-	-	-	필기 면제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</li> <li>* 법무채권관리(변호사 또는 변리사)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</li> </ul>



-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 및 입사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게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,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한하여 인정
- 가점 항목은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하나만 부여
- 보훈(취업지원대상자) 모집부문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외 1개 가점 추가 인정
- 장애인 가점은 서류전형 10점, 필기전형 5점, 1,2차면접전형 10점 부여
- 우대사항 비해당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자로 기재 후 합격한 경우,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
- 입사 후 근무지 배치 시, 지역인재(비수도권, 이전지역)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우선 배치 단,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전국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
- 부산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는 입사지원서에 '이전지역 인재' 기재 시 졸업(예정)증명서 발급 내용 기재(접수마감일 이전까지 발급) 및 해당 증명서 전형 중 제출 (추후 졸업예정증명서 미제출 또는 발급 불가 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)
- 부산이 아닌 지역 대학교 졸업예정자(24.2월)는 이전지역 인재 비해당(해당자로 기재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)

※ [비수도권 및 이전지역(부산) 인재 판단 기준]

- 대학교 졸업자·졸업예정자 : “대학교”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
예시) 부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비수도권(부산이외) 소재 대학 졸업(예정)자  
→ 이전지역인재 (X), 비수도권 지역인재 (O)  
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 소재 대학 졸업(예정)자  
→ 이전지역인재 (O), 비수도권 지역인재 (O)
- 대학교 재학·휴학·중퇴자 (**졸업예정자 제외**) :  
- (비수도권 지역인재) “대학교”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
- (이전지역(부산) 지역인재) “고등학교”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
예시) 부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비수도권(부산이외) 소재 대학 재학·휴학·중퇴  
→ 이전지역인재 (O), 비수도권 지역인재 (O)  
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 소재 대학 재학·휴학·중퇴  
→ 이전지역인재 (X), 비수도권 지역인재 (O)
-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자 : “최종 졸업 학교”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

### □ 신분증 지참

- 전형단계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**미지참 시 응시 불가**
- \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만 인정되며,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'를 제출  
(단, 위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생년월일 및 본인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하여 인정)

### □ 제출서류(최종합격자에 한함)

- 모든 서류는 전형별 제출 마감일(별도 안내) 기준 **3개월 이내 발급분**으로 제출
-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등 해당하는 **증빙서류 미제출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**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**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**
-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**면접전형 시 접수**할 수 있음(전형 시 별도 안내)
- 본인의 **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해당 여부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**을 위해, **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발급·준비·점검**하신 후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
- 전형 중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**개인정보를 지우고** 제출

#### 필수 제출 서류

- 최종학력 증명서
  - 대학교 졸업(예정)자 : 대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
  -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(예정)자 :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(예정) 증명서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
  - 대학교 재학·중퇴·휴학자 : 대학교 재학·중퇴·휴학 증명서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
  - 최종학력 증명서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또는 이전지역(부산) 인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  
(예. 최종학교 본·분교 구분이 증명서에 없는 경우, 2개 이상 학교 재학·졸업의 경우 등)
  - 이전지역(부산) 인재 해당자는 **접수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** 졸업(예정)증명서 제출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  -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·중퇴·휴학자의 경우 제출
- 최종학교 성적증명서
  - 대학교 졸업(예정)·재학·중퇴·휴학자 : 대학교 성적 증명서
  -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(예정)자 : 대학원 및 대학교 성적증명서
  - 편·입학자 : 편입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
  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: 고등학교 성적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(남자는 병역사항 모두 기재)
- 기본증명서(상세)
- 신체검사서

해당자  
제출  
서류

- 공인 외국어성적증명서(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 사전 등록된 경우 미제출)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
- 국가유공자 확인서 /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(상이등급 기준 해당자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
  -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(가구 구성원 확인용)
- 한부모가족증명서(본인 명의)
-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- 다문화가족 증명자료
  - 가족관계증명서,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
  -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(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, 前 국적 표시)
  -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등
- 경력단절여성 증명자료
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
-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
- 기술보증기금 우수 청년인턴 입사 추천서(정규직 우대가 명시된 것에 한함)
- 경력증명서(징계 내역 및 퇴사 사유 확인 포함)
  - 입사지원서 '경력사항'에 기재한 모든 근무경력에 대해 제출
- 직업교육 수료증·이수 확인서 등
  - 입사지원서 '교육사항'에 기재한 모든 직업교육 과목에 대해 제출
-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
  - 입사지원서 '자격사항'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에 대해 제출
  - 일부 자격증(CFA, FRM 등)은 시험합격통지서(사본, 이메일 출력) 제출 가능
- 전역예정증명서
- 박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

## 9 유의사항

### ※ ['코로나19' 관련 안내사항]

- 전형 절차 진행 중 정부 방역 지침 변경 시 그에 따르며,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- 전형 당일 '코로나19' 유증상자 및 확진자(확진통지 및 자가격리 통지서 증빙 등)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단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 고사장에서 전형 응시 (자세한 사항은 각 전형별 추후 안내 예정)
- 전형 중 실시되는 '코로나19' 확산 예방 절차(마스크 착용, 발열 체크, 손소독 실시 등)는 모든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, 지원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.

- ▶ 본 계획(절차 및 일정)은 '코로나19' 확산 동향 또는 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www.kibo.or.kr)에 공고합니다.
- ▶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[채용 홈페이지\(kibo.incruit.com\)](http://kibo.incruit.com)의 FAQ를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'채용문의'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가급적 공고와 FAQ 내용에 대한 **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**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, **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**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·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,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**비리행위**가 확인되는 경우, **합격이 취소**되거나 입사한 이후라도 **퇴직처리**될 수 있으며,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**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▶ 채용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 **응시를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**하며,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**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**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▶ 기술보증기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**이해관계인 제척·회피 제도를 운영**합니다.
- ▶ 전체 채용과정에서 **블라인드 채용에 위배**될 수 있는 내용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\* 블라인드 처리하며, 이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 - \* 입사지원서의 주소, 이메일, 자기소개서 등에 성별·신체조건·학력·학교명·연령·가족관계·출신지·혼인 여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
  - \* 전형 과정 중 기금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 등 포함
- ▶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착오·누락·오기재나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, 지원자격 미비자의 응시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▶ 1·2차 면접전형 시 지원자 사정에 의한 **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**합니다.
- ▶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합격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▶ 신입직원 입문과정 연수 및 입사식을 모두 수료한 경우에 한해 일반직 5급 직원으로 임용됩니다.

- ▶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기재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 및 합격자를 선발하며, 증빙서류는 추후 면접전형 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▶ 최종합격 전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,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검증,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, 입사지원서 외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▶ **모집부문별 예비합격자**를 전형단계(서류전형 제외\*)마다 운영하고, 합격자의 다음 단계 응시 포기,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및 추가 합격될 수 있습니다.
  - \* 필기전형 면제인 'CPA·세무사', '박사', '변호사·변리사' 모집부문에 한하여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100% 선발 운영(그 외 모집부문은 서류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격자 없음)
  - \*\* (필기전형, 1차면접전형)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10% 운영, (2차면접전형)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30% 운영 및 채용인원 3인이하 모집부문(CPA·세무사, 법무채권관리(일반, 변호사·변리사))의 경우 2차면접전형 시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75%로 운영  
단, 박사 부문의 경우, 예비합격자는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고득점 순 선발
- ▶ 전형결과 모집부문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▶ 기술보증기금 「인사규정」 상 **채용제한 사유*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2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5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  6. 병역을 기피한 자
  7.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
  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
  9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
 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

▶ **채용비리에 관하여**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「채용비리 신고센터」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
1. 이의 목적 : **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**
  2. 신청기간 :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익일 이내
  3. 신청방법 :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「채용비리 신고센터」를 통해 신청
    -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 연락처, 생년월일, 이메일, 채용 공고명, 전형단계, 신고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
  4.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
  5.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
    - 본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·절차 등에 대한 문의
    - 개인정보 관련 요구(응시자, 시험 출제자, 평가 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 기관) 등 타 법령 저촉의 경우
    -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- ※ 평가기준, 전형결과 등과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**채용비리 관련 이의신청제도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**, 이와 관련한 답변 불가
- 

- ▶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, 기금 규정과 정부의 「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(‘18.5.3.)」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▶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신청한 반환청구에 한하여 반환합니다.

- 
1. 반환대상서류 : 면접전형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
  2. 반환청구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
  3. 청구방법 : ‘붙임4’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([recruit@kibo.or.kr](mailto:recruit@kibo.or.kr))으로 신청
  4.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기금 내규에 따라 파기
  5. 반환 제외 :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,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, 기금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- 

끝.

## 붙임 1

## 인정 자격증 목록

- 자격증은 **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** 합격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아래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
-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(일반, 이공계, 박사, CPA·세무사, 보훈), 법무·채권관리

(단위 : 점)

특 점	20	17	12
기술보증 및 기술평가	기술사 한국공인회계사(KICPA)	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(CFA-Level 3)	미국공인회계사 (AICPA) 국제재무분석사 (CFA-Level 1,2)
법무· 채권관리	변호사 변리사	법무사 공인노무사	-
특 점	9	6	2
기술보증 및 기술평가	국제재무위험관리사 (FRM Part2 합격 포함) 국제공인관리회계사 (CMA)	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(CISA) 여신심사역(CLO) 신용위험분석사(CRA) 투자자산운용사 데이터분석전문가(ADP)	기술신용평가사(2급이상) 신용분석사(CCA) 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(ADSP)
법무· 채권관리	-	신용위험분석사(CRA)	신용관리사

- 전산

(단위 : 점)

특 점	20	15	10	5
전 산	CCIE CISSP CISA OCM	OCAJP CCNP ADP DAP SQLP 정보보안기사	OCJP(SCJP) OCPJP OCWCD CCNA OCP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	정보보안산업기사 ADSP



**◇ 비수도권 지역인재 ◇**

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(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포함) 지역을 제외한 **비수도권 지방학교**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- \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 「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」 기준
- \* 아래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 해당 여부는 인사혁신처 「균형인사지침」 참고

**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****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**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 
- **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실 것**  
\* (예시) 건국대 충주 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한양대 안산 캠퍼스, 고려대 세종 캠퍼스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
- (5)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
**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**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
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(1)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2개 이상 대학의 재학 이력이 있는 경우

(1)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졸업(예정)인 경우

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
(2)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
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(3)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(4)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을 졸업(예정)인 경우

-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
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

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
◇ 이전지역 지역인재 ◇

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(부산)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

- ※ 대학 졸업예정자란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 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
- ※ 대학 졸업예정자는 **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**에 한하여 '이전지역 인재(졸업 예정)를 선택하실 것  
(반드시 발급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요 및 추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)

\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국토교통부 예규 「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 기준

□ 이전지역(부산) 학교의 범위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  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 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 - **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실 것**
  -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이전지역 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(예정)인 것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
  -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(서울·경기·인천 등)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,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이전 지역 인재로 포함
- (3)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

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
-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-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-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(4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-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#### □ 이전지역(부산) 인재의 범위

이전지역(부산)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로 다음과 같음.

(1)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
-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(2)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자는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(3)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지역 인재 제외
-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지역 인재 제외

## □ 이전지역(부산) 인재 해당여부 참고사례

### (1) 본교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이전지역(부산)에 위치한 경우  
: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 해당
- 본교가 이전지역(부산)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  
: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인재에 해당
- \* (예시)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는 경남에 위치하므로  
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 지역인재 해당

### (2) 이전지역 대학과 타 지역 대학 모두 졸업한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### (3)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\* 단 이전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### (4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 대학을 변경한 경우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### (5)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\* 단 이전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### (6)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### (7)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**붙임 4****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(양식)**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 서식]

**채용서류 반환청구서**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술보증기금 인사부장 귀하

**공지사항**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 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